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71 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김재섭·백종헌·엄태영

서천호 · 윤한홍 · 권영진

강승규 · 최수진 · 신성범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.

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가족문화의 날(5월 두 번째 금요일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	제2조(공휴일)		
호와 같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6.</u> 가족문화의 날(5월 두 번째		
	<u>금요일)</u>		
<u>6.</u> ~ <u>10.</u> (생 략)	<u>7.</u> ~ <u>11.</u> (현행 제6호부터 제1		
	0호까지와 같음)		